

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비세 과세

○ 과세대상

-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, 재화의 수입

○ 납세의무자

-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

○ 과세표준 및 세율

- (과세표준)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『부가가치세법』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
- (세율) 과세표준의 100분의 21

※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(2013년)에 따른 세수 보전조치로 5% → 11%로 인상(2014년) →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15%로 인상(2019년 4%인상) → 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전환에 따라 21% 인상(2020년 6% 인상)

○ 안분기준

- (지역별 소비지출에 따른 부분 5%p)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

※ 소비지수 :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가 중 치 :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, 수도권은 100%, 광역시 200%, 도 300%

- (취득세 감소분 등에 따라 배분하는 부분 6%p)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, 지방교육세, 지방교부세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

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

- (국고보조금의 지방사업 전환과 연계한 인상분 10%p 배분 부분) 지역별 소비지출에 따른 부분(5%p) 및 취득세 감소분 등에 따라 배분하는 부분(6%p)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안분방식 규정

구 분	안분방식	납입받는자
가. 전환사업보전분(3년한시)	대통령령 (전환사업 비용보전)	지역상생발전기금
나. 기초지자체·교육청 재원변동 보전분 (3년한시)	대통령령(감소액 보전)	시장·군수·구청장, 시·도 교육감
다.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금액	대통령령 (지역별 소비지출 고려)	시·도지사

Ⅰ 지방소비세 징수업무 흐름 Ⅰ

